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동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2. 11. 17.

관계부처 합동

순 서

[요 약]	i
I. 추진배경	1
II. 그간 논의경과	3
III. 정책 추진방향	4
IV. 세부추진과제	5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	5
2.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11
3.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	13
4. 민간협력 활성화	16
V. 향후 추진일정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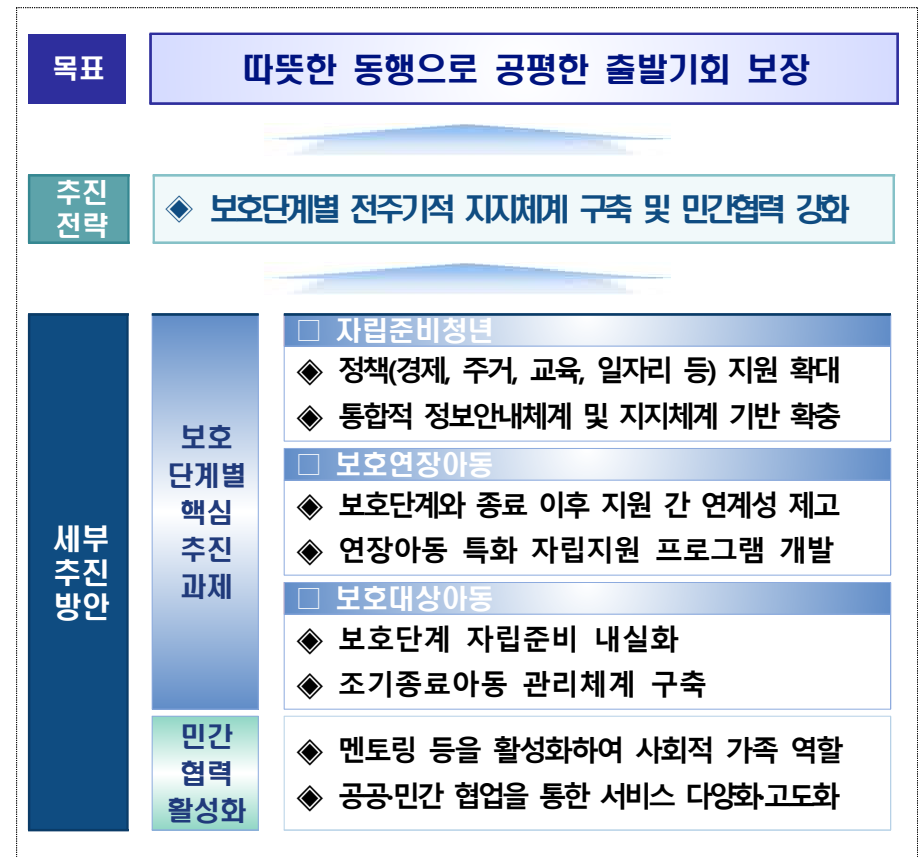
요 약

1 추진배경

- '21.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마련 등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 대상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지원은 상당 부분 진척
-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여전히 높으며, 최근 양육시설 출신 청년 사망* 사건으로 보완대책 필요성 제기

* 보호연장 후 기숙사 거주 중이던 A군, 17세 조기종료 후 원가정 복귀한 B양 극단 선택('22.8)

2 정책 추진방향



3 주요 추진 과제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

① 경제적 지원 확대

- (자립수당) '22.8월 월 35만원에서 '23.1월 40만원으로 인상,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추후 단계적 확대 검토
- (자립정착금) '22년 800만원에서 '23년 1,000만원 이상으로 지자체에 인상 권고, 금융교육 이수와 연계하여 분할지급 방식도 권고
- (디딤씨앗통장) 만 24세 도달 시 별도 해지 절차없이 자동 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의료비)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23.하)

② 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기반 구축

- (주거)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 확대 추진(만 20세 이하→만 22세 이하)
 - (교육)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취약계층에 해외연수 기회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지원 등
 - (일자리)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업 강화(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자립준비청년 특화과정 운영(청년 일경험 지원) 등
- ※ 이 외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약준비금 신설('23년, 최대 3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23년, 1년 최대 960만원→2년 최대 1,200만원) 등
- (정보안내)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자립준비청년 전용 콜센터 운영

③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 (전담인력) 자립준비청년 자립상황 모니터링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의 인력 지속 확충('22년 120명→'23년 180명)
* (1인당 담당 청년 수) '22년 약 100명 → '23년 70명, 선진국은 30명 내외
-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120명, 월 10만원) 신설 및 지역별 모집·활동 지원으로 소속감 제고
* 보호아동 방문교육, 멘토링 등 실시하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2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① 기존 정책간 연계성 강화

- (지원확대)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대상에 연장아동 포함
*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생계급여) 시설 밖 거주 시 시설급여(평균 29만원)가 아닌 개인계좌(최대 약 58만원)로 받을 수 있게 개선

② 연장아동 특화프로그램 지원

- 별도거주·취업준비 등 연장아동 특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 프로그램(예: 부동산제도·4대보험 교육 등) 개발, 아동시설·전담기관 등에 보급

3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

① 자립준비 내실화

- (인력충원) 양육시설 뿐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등에도 자립지원 인력 충원
- (프로그램개선) 아동 연령, 향후 진로 등 아동 상황을 반영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 개편, 자립캠프 및 자립선배와의 만남 확대

② 조기종료아동 관리체계 구축

- (관리·지원체계) 만 18세 이전 조기종료아동(원가정 복귀, 무단퇴소 등) 관리·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 및 관리책임 명확화
- (원가정 복귀)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위기도 가정은 지자체 사례관리 서비스(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등) 적극 연계
- (원가정 복귀 외) 지자체·관계기관 등 협업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4 민간협력 활성화

① 다양한 우수 민간자원 발굴·확산

- 개인·대학·기관 등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담은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민간 모범사례* 적극 확산
* 예) 소득일자리장서 등을 지원하는 드림온 프로젝트 전국화(전기안전공사 등 7개 기관)

② 민간자원 연계 체계화 및 통합 정보 제공

- (방식) 전문기관(보장원·전담기관)이 멘토링, 법률지문, 경제·금융 교육 등 다양한 민간자원과 대상자 간 연계 역할 수행
- (플랫폼) 홍보 및 대상자 모집·지원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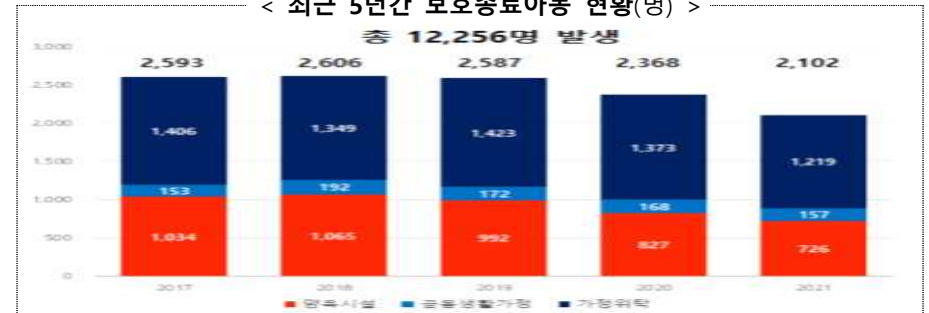
문

I. 추진배경

1 현 황

- (발생)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혹은 보호자가 양육에 적당하지 않아 분리조치되는 보호대상아동은 年 3,500명 이상 발생
 - 보호대상아동은 일정 연령* 경과 시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가 종료되어 年 2,400명 가량의 아동이 살던 곳을 떠나 자립 시작
 - * 만 18세, 보호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현황(명) >



- (자립현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에 비해 소득·주거·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자립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
 -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인해 불안·우울, 자살 생각 등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
- (지원필요성) 이른 시기, 홀로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모의 마음으로 챙겨야 할 필요

< 대통령 말씀(‘22.8.29) >

- ◆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
- ◆ 교육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선 안된다. 부모 없이 사회에 나와 학업, 일자리,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할 것

- **(그간평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으로 그간 복지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새롭게 마련
- 지원강화 방안 내 대다수 과제를 완료하여 경제적 지원, 주거·교육·일자리 지원 등은 상당 부분 진척
- **(보완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여전히 높으며, 최근 양육시설 출신 청년 사망으로 보완대책 필요성 제기
- ① **(지원시기)**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보호종료 이후에 집중되어, 보호단계(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의 지원은 제한적
- 보호종료 전·후를 아우르지 못하여 연속적인 자립준비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관리체계도 부족
 - 특히, 보호연장아동*과 조기종료아동**은 자립준비청년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만 18세 이후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연장
** 만 18세 전 원가정 복귀, 무단 퇴소 등으로 보호종료
- ② **(사회적 지지체계)**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안정적 사회 진출에는 불충분
- 특히, 가정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과 달리 기댈 곳 없는 청년들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원체계 필요
- ③ **(민간 협력 부족)**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보다 정부 주도 정책·제도 중심
- 대상자와의 접촉을 높이고, 서비스가 다양화·고도화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 **全 부처가 나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호단계부터 보호종료 전·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 **민간과도 협력하여 멘토링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다양화·고도화**

II. 그간 논의 경과

1

추진경과

- **(소통노력)**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 행사·현장방문·간담회·토론회 등 실시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종사자,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개선점 발굴

< '22년 주요 소통사례 >

- ✓ **(행사·현장방문)** 대통령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행사(9월), 복지부 제1차관 아동양육시설 방문(11월)
- ✓ **(간담회)** 복지부-자립준비청년 간담회*
* 제1차관(現 장관) 충남(7월), 인구정책실장 광주(8월), 인구아동정책관제1차관 서울(9월·11월)
- ✓ **(토론회)** 국회의원(8월) 국민의힘 김미애의원, 9월 정의당 강은미의원) 주재 토론회
- ✓ **(타기관)** 기재부 제2차관 사회경제정책브리더스커피(6월), 국조실 청년정책기획관 자립지원7차 간담회(9월)

2

주요의견

- **(당사자)** 자립 준비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 보호단계(시설)부터의 자립준비 필요성·내실화 강조
- 한편, 위기 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없다는 점과 자립준비청년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시설 보호 중일 때부터 충분히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절실합니다.”

- **(관계자)** 질 높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 강조 및 정책 방향 제언
- 아동양육시설 청년 사망사건(8월)을 계기로, 보호연장아동과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충분한 자립지원 서비스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현장 종사자)
“영국의 개인상담사 제도처럼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지원계획을 세우고, 보호종료 후 지속적으로 만나 개별 지원하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민간 전문가)
“현행 자립지원 정책들이 대부분 보호종료 후에 집중되어 있으나, 보호연장아동이나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민간 전문가)

Ⅲ. 정책 추진 방향

목표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추진 전략

◆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세부 추진 방안

보호 단계별 핵심 추진 과제

□ 자립준비청년

- ◆ 정책(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지원 확대
- ◆ 통합적 정보안내체계 및 지지체계 기반 확충

□ 보호연장아동

- ◆ 보호단계와 종료 이후 지원 간 연계성 제고
- ◆ 연장아동 특화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호대상아동

- ◆ 보호단계 자립준비 내실화
- ◆ 조기종료아동 관리체계 구축

민간 협력 활성화

- ◆ 멘토링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족 역할
- ◆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고도화

Ⅳ. 세부 추진 과제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

- ◆ (중점추진방향)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및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 확충

경제적 지원 확대

①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

- (현황)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자립수당을 신설('19년 시범사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19) 법적 근거 마련·시범사업 시작 → ('20)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 ('21) 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 → ('22.8)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
- (개선) '23년 월 40만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추후 단계적 확대 검토

② 자립정착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절차 개선

- (현황) 사회 진출 초기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립정착금 1회 8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중
- 현장(자립준비청년)에서는 사회 초년기에 너무 큰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아 부담스럽거나, 위협에 노출된다는 지적
- (개선) '23년 1,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토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지자체 이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 금융교육* 이수 여부를 고려해 분할 지급(예 : 1회 1,000만원 → 2회 각 500만원)하는 방안도 권고('23)

* 정부·공공기관·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③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급절차 개선

- **(현황)**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부터 특정 자립 용도*로 인출이 가능하며, 만 24세가 되면 자유롭게 인출 가능
 - * 만 18세~만 24세 미만 청년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의 경우 인출 가능
- 청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자립목적 증빙서류(만 24세 이전) 및 통장 지참하여 지자체·은행 방문 필요
- **(개선)** 만 18세 이후 청년 명의 통장과 연결, 별도 해지 절차 없이 만 24세가 되면 자동으로 인출(만 18~24세 자립용도 인출은 유지) 추진('23)
 - 만 24세 이전 인출 시에도 자립목적 증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 * 예) 시설장·아동보호전문요원 등의 동의를 받아 자립목적 증빙 같음 등
 - 통장이 지자체 명의로 되어 있어 현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상시 어플을 통해 본인 계좌 현황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23.상)

구분	As-Is	To-Be
연령 무관	▶ 지자체 협조 없이 본인 적립금·매칭금 확인 불가	▶ 은행 어플을 통해 본인 계좌 현황 파악 가능
만 18세~만 24세	▶ 자립목적 증빙해야 적립금·매칭금 인출 허용	▶ (예) 연장 시기 시설장·전담요원 동의로 목적 증빙 같음
만 24세 이상	▶ 인출을 위해 지자체 및 은행 방문 필요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인출

④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 **(현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불안정한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커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 보호종료 5년 내 응답자 중 질병 경험자가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은 비중 ('20 자립실태조사)
- **(개선)**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23.하)하여,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추진
 -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 1차 병원 외래 1,000원, 2·3차 병원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약국 이용 500원

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 확대

-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보호연장 기간부터 보호종료 후 5년간 근로·사업소득 공제(5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중
 - 자립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나, 보호종료 후 일시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500~1,500만원)은 재산가액 산정 시 포함
- **(개선)**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고, 자립정착금을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23.상)

자립기반 구축

① 주거 지원

- **(현황)** 자립준비청년(연장이동 포함)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전세·건설·매입임대) 지원 중이며, 공공임대 거주율 약 48%('20 자립실태조사)
 -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전까지는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전세임대 거주 5년 동안 임대료의 50% 감면
- **(개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23)

② 교육 기회 제공

- **(현황)**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 대비 진로탐색 기회가 적고 대학진학률이 낮아*,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 자립준비청년 62.8%, 일반 청년 70.4%('20 자립실태조사)
- 현재 커리어넷(온라인 진로정보망)에 보호아동 전용 상담창구 운영 및 대학 진학 시 국가장학금 II유형·근로장학금 우선 지원 중

○ **(개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등 진로지원 서비스 질 제고, 학업 집중을 위한 생활비 지원, 해외연수 지원(23)

① (진로지원) 전문적 진로상담을 위해 커리어넷 진로상담사 및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 진로지도 역량 강화 지원

*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연수 과정에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진로교육 내용 포함, 자립지원 종사자 대상 진로지도 교육 시 강사 지원

② (생활비지원) 대학 진학 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	
기존	확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90%) 충족 시에만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 포함)은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③ (해외연수)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③ 일자리 지원

○ **(현황)**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적절한 취업 연계를 통한 생계 수단 제공 필요

-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대상에 자립준비청년(연장아동 포함) 포함 지원 중

< 주요 지원 사업 >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일경험·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I·II유형 공통)와 구직촉진수당(I유형, 최대 300만원) 지원
- ② 청년 일경험 지원 : 미취업청년 대상 직무체험 기회 제공
-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 제공
- ④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해오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월 80만원, 최대 1년간)

○ **(개선)**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확대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발굴·홍보·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업 강화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화 상담매뉴얼 마련(22.하)

② (청년 일경험 지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 설계·운영(23)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등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23년부터 '도약준비금' 신설, 지원 기간 확대

* 도약지원 프로그램(5개월) 이수 청년 대상 최대 300만원 지급(참여·이수수당)

④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1년→2년) 및 지원 수준 상향(1년 최대 960만원→2년 최대 1,200만원)(23)

④ 통합적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

○ **(현황)** 자립준비청년 대상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나, 청년별로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 격차 발생

○ **(개선)** 보호 전·후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내 창구 마련(23.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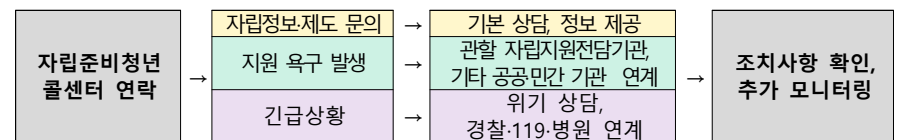
① (온라인 플랫폼) 정부·지자체, 각종 민간사업을 한 번에 찾고, 청년 간 소통·멘토링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온라인 정보플랫폼 역할(안) >

원스톱 정보 플랫폼	소통창구 제공
① 분야별 자립지원 정보 통합 제공 ② 민간 자립지원 사업 직접 홍보모집신청	① 온라인 자립 멘토 상담 창구 운영 ② 자립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운영

② (콜센터 운영) 각종 자립 정보 문의 등 도움 필요 시 연락 가능한 자립준비청년 전용 콜센터 운영 및 전문상담사 배치

< 핫라인 운영 체계(안) >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①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 **(현황)** '22년부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개인별 자립상황 모니터링,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중
 - 아직 초기 단계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개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확충('22년 120명→'23년 180명)하고 처우도 개선
 - '23년 이후에도 전담인력을 단계적 확충하여 업무부담을 완화(1인당 담당 청년 수 '22년 약 100명→'23년 70명)하고, 제공서비스의 질 제고 추진

< 참고 > 유사사업의 사례 담당 건수

- (타 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20가구 내외, 정신건강사례관리 30명 이내
- (캐나다) 자립지원 담당관 1명당 20~30명, 집중사례 건 10명 이하 배정

② 자조모임 활성화

- **(현황)** 자립준비청년들이 '바람개비서포터즈'를 구성,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방문교육, 멘토링 중
 - 청년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소속감·안정감을 느낀다는 의견
- **(개선)** 서포터즈 활동비를 신설(120명 대상 월 10만원, '23)하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중심 지역별 모집·활동 지원*으로 소속감 제고

* (아동권리보장원) 신규 서포터즈 예비학교 및 권역별 서포터즈 워크숍 개최, 지역별 자조모임 운영 지원, 우수사례 활동집 발간 등

2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 (중점추진방향) 보호단계와 종료이후단계 간 정책적 연계성 제고 및 특화 자립지원프로그램 지원

기존 정책간 연계성 강화

①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도록 지원 확대

- **(현황)** 별도 사유 없이 보호 연장이 가능하나('22.6월 법 개정), 보호연장아동은 자립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향
- **(개선)**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사업을 보호연장아동까지 확대 적용
 - ① (맞춤형 사례관리) 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 포함*('23)
 - * '23년 지원대상 총 2,000명 지원('22년은 1,470명) 중 200명 내외
 - ② (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지원 대상에 보호연장아동 포함('22.4분기)
 - * 3개월간 10회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 ③ (고용지원 등)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에 보호연장아동 포함('23)
 - 자립준비청년이 신규로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무이자 지원,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도 보호연장아동 포함

② 시설 밖 자립경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현황)** 보호연장 시기에도 보호중일 때와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시설급여 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

○ **(개선)** 생계급여 지급방식 개선 및 거주정보 관리 강화('23.상)

- ① (지급방식) 시설 밖 거주 시 시설급여(평균 29만원)가 아닌 개인 계좌(최대 약 58만원)로 받을 수 있게 개선
- ② (거주정보) 보호연장 시기 거주 정보(시설, 기숙사, LH 공공임대 주택 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현황)** 시설 자립프로그램은 만 18세 이하 보호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호연장 기간 자립준비 공백 발생
- **(개선)** 보호연장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제공
* 성인, 대학생, 직장인, 취준생, 시설 밖 별도 거주, 원거리 이동 용이 등
- ① **(프로그램 개발)** 보호연장아동 욕구 분석 결과 및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제작('23.상)

< 특화 자립 프로그램(예시) >

분야	프로그램 예시
① 일상생활 분야	■ 4대 보험 종류와 가입·보험료 납부 방법 교육 ■ 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 교육
② 주거·경제 분야	■ LH 공공임대, 부동산 제도 이해 교육 ■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금융상품 등 소개
③ 취업역량 분야	■ 자소서 작성법, 면접 기술 교육 ■ 진로·적성 검사, 취업 상담 프로그램
④ 심리·정서 분야	■ 심리검사·심리치료 프로그램 ■ 자립 선배가 들려주는 자립생활 팁

- ② (운영·평가) 자립지원전담기관별 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23), 아동권리보장원은 운영 상황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③ (고도화) 자립지원 실태조사('23) 시 보호연장아동 표본을 별도 모집, 수요를 분석하여 매뉴얼 반영

3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

◆ (중점추진방향) 보호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립준비 지원 및 조기종료 아동 관리체계도 구축

자립준비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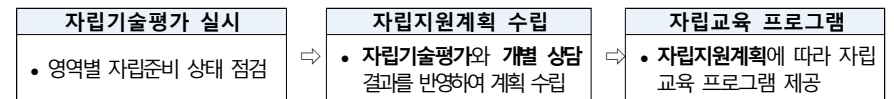
① 자립지원 인력 확충 및 업무 체계 개선

- **(현황)**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가 보호아동(만 15세 이상) 자립지원 업무 수행, 다만 양육시설 외 인력 부족*으로 편차 있음
* (지원대상아동/전담요원) 공동생활가정 1,178명/4명, 가정위탁 5,371명/43명
- **(개선)** 양육시설 외에도 인력 충원 및 퇴소 전후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23)
 - ① (인력충원)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172명, '23년) 채용 시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 추진
 - 가정위탁지원센터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지방이양사업)
 - ② (역량교육)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교육 및 위탁부모 교육 과정에 자립 지원 관련 프로그램 포함
 - ③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아동보호전담요원) 양육상황 점검(연 4회) 시 자립지원 현황 점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지원

② 자립준비 프로그램 내실화

- **(현황)** 매년 아동별로 자립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자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나, 아동의 개별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준비 업무 절차 >



○ **(개선)**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 ① (기술평가·지원계획 수립) 아동 연령, 보호연장 여부, 향후 진로와 거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자립기술평가, 계획서 개선(‘23.상)
- ② (프로그램)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하고, 모범사례(예: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모델 등) 발굴·확산(‘23)

③ **자립체험 및 경험 공유 기회 확대**

○ **(현황)** 시설·위탁가정 등이 보유한 한정된 자원으로 자립준비 진행

○ **(개선)** 자립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기회 제공 확대(‘23)

- ①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체험(독립 생활공간 배정)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 확대 운영
* 자립체험 아동 (‘22) 320명 → (‘23) 450명, 권역별 자립캠프 운영(‘23)
- ② (전담기관) 희망디딤돌센터와 연계해 보호아동 자립체험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담기관별 보호아동 자립 프로그램 운영
- ③ (서포터즈) 지역별로 바람개비 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만나 자립경험을 공유하는 만남의 장 확대

조기종료아동 관리체계 구축

① **관리·지원근거 마련 및 관리책임 명확화**

- **(현황)** 원가정 복귀 등 사유로 만 18세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 이탈하여 관리·지원이 미흡
- 조기종료아동 중 90% 이상이 원가정 복귀, 나머지는 타법 시설(청소년 쉼터 등) 입소, 무단 퇴소 등

* ‘21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조기종료아동 733명 중 원가정 복귀 708명(96.6%)

○ **(개선)** 조기종료아동 사후관리·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23)

- ① (규정신설)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및 필요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예) 만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 등에서 퇴소한 아동 중 만 18세 이후 5년간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관리책임)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지원

② **원가정 복귀 아동 관리·지원**

- **(현황)** 아동보호전담요원이 1주일 이내 가정방문을 포함, 1년간 4회 사후관리 실시
- 다만, 만 18세 전 원가정 복귀 시 각종 정책 지원이 중단되어, 원가정 복귀 대신 분리보호(보호조치)를 유지할 유인으로 작용
- **(개선)** 원가정 지원 강화 및 필요시 만 18세 이후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검토

- ① (원가정 지원) 분리보호 결정 전 원가정 사정을 강화하여, 분리 사유*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가족센터 연계 등)

* 예) 경제적 어려움, 이혼 후 양육 곤란, 질병·실직 등

- ② (사례관리) 위기도 높은 사례*는 시군구 드림스타트(만 12세 이하)·희망복지지원단(만 13세 이상)으로 적극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 실시

* 예) 생계곤란 가구이거나 가구원 중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있는 경우

- ③ (추가지원) 만 18세 이후 자립 시기, 필요 시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제도개선 검토

③ 원가정 복귀 외 사유의 조기종료아동 관리·지원

- **(현황)** 타법 시설 입소, 무단 퇴소 등으로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되는 경우 기존 관리·지원체계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편입 가능
 - **(개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사후관리 및 발굴·보호조치⁽²³⁾
 - ① **(사후관리)** 원가정 복귀 외 사유로 보호가 조기종료된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1년간 4회 사후관리 실시
 - 청소년 쉼터 등에 입소한 경우 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아동보호전담요원 간 관리·지원사항 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
 - ② **(위기아동 발굴)** 가출 등으로 무단퇴소한 경우 여가부·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보호체계 재편입 또는 청소년 쉼터 입소 조치
- *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아웃리치 등 활용

4 민간협력 활성화

◆ (중점추진방향) 민간과의 협업 강화로 제공 서비스 다양화·고도화

① 다양한 우수 민간자원 발굴·확산

- **(현황)**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하기 희망하나, 방법·절차 등을 모르는 경우 존재
- **(개선)** 다양한 주체별 가이드라인 배포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
 - ① **(가이드라인)** 개인·대학·기관 등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제시,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포함^(23.상)

<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 예시 >

주체별 지원예시	① 개인	■ 디딤씨앗통장 후원 ■ 보호단계아동 대상 심리·정서 지원 자원 봉사
	② 대학	■ 고등학생 등 대상 대학 투어 프로그램 제공 ■ 장학금 지원, 기숙사비 감면 ■ 교수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③ 기업·공공기관	■ 고등·대학생 등 대상 기관 소개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제공 ■ 장학금 지원 ■ 임직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협조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지원사업 및 담당부서 연락처 ■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활동상황, 주요 지원 요청사항 및 담당자 연락처

② (우수사례) 한국전기안전공사 '드림 온(ON) 프로젝트' 전국화 추진 등 모범사례 확산 지원⁽²³⁾, 필요시 기존 사업에 새로운 기관 참여도 장려

< 한국전기안전공사 드림 온 프로젝트 >

- ◆ **(개요)** 전북 지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일자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 활동, 7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화 업무협약^(9.29)

구분	사업 내용
열려뜰 어른 드림	■ 학비, 기숙사비, 기타 경제적 지원
잡(Job) 아(我) 드림	■ 기업 면접 기회 제공, 일자리 연계 지원
안아줄게 아프지마 드림	■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등 제공

- ◆ **(참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아동권리보장원, 새만금개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굿네이버스

② 민간자원 - 대상자 간 연계 체계화

- **(현황)** 민간기관 개별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이용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알고 찾는 데 한계
- **(개선)** 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이 민간 기관과 자립준비청년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 수행



① (멘토링) 다양한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 자립준비청년 대상 멘토링 활성화(‘23)

< 민간·공공 멘토링 사례 >

구분	운영방안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기업 종사자 간 멘토링 운영 ■ 자립준비청년 활동비 지원, 교류의 장 마련
② 삼성전자	■ 기업임직원-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 운영
③ 공무원연금공단	■ 퇴직공무원-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 운영
④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 종교계인사-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 운영 추진

-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역사회 직종별 전문가를 모집, 자립준비청년과 연결시켜주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

② (법률자문) 아동권리보장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체결한 MOU 지원범위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23.상)

< 법률자문 지원 구조 >

자립준비청년	아동권리보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적 도움* 필요시 보장원에 신청 * 채무, 사기피해 등	■ 법률자문 신청 안내 ■ 신청서류 취합	■ 법률상담, 소송 수행 등 법률서비스 제공

-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과 민간 법률 단체(지역 변호사회 등) 간 추가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

③ (경제·금융교육) 경제·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 재무관리 등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23)

< 경제·금융 교육 사례 >

구분	운영방안
① 찾아가는 경제교육 (신용회복위원회)	■ 재무설계, 합리적 소비저축방법, 금융사기 예방 등 교육 ■ 전담기관, 시설 등 신청을 받아 집합교육 제공
② 종합재무설계 상담 (국민연금공단)	■ 소득, 지출관리, 목돈마련 등 일대일 재무 상담 제공
③ 아름다운은행 금융교육 (신한은행)	■ 어린이 금융교육, 청소년진로직업체험교육 등 제공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 찾아가는 교육 제공

③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 정보 제공

- (개선) 민간사업을 직접 홍보하고, 대상자 모집·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고도화(‘24.상)

V. 향후 추진일정

* 종료시점 기준

추진과제목록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		
1) 경제적 지원 확대		
(1)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	'23. 상	복지부
(2) 자립정착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절차 개선	'23. 하	복지부
(3) 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절차 개선	'23. 하	복지부
(4)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23. 하	복지부
(5)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 수준 확대	'23. 상	복지부
2) 자립기반 구축		
(1) 주거 지원	'23. 하	국토부
(2) 교육 기회 제공	'23. 하	교육부
(3) 일자리 지원	'23. 상	고용부
(4) 통합적 자립지원 정보안내체계 구축	'23. 상	복지부
3)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1)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23. 상	복지부
(2) 자조모임 활성화	'23. 상	복지부
2.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1) 기존 정책간 연계성 강화		
(1)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도록 지원 확대	'23. 상	복지부
(2) 시설 밖 자립경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3. 상	복지부
2) 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 지원		
(1) 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 지원	'23. 하	복지부
3.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		
1) 자립준비 내실화		
(1) 자립지원 인력 확충 및 업무 체계 개선	'23. 하	복지부
(2) 자립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23. 상	복지부
(3) 자립체험 및 경험 공유 기회 확대	'23. 하	복지부
2) 조기종료 아동 관리체계 구축		
(1) 관리·지원근거 마련 및 관리책임 명확화	'23. 하	복지부
(2) 원가정 복귀 아동 관리·지원	'23. 하	복지부·여가부
(3) 원가정 복귀 외 사유의 조기종료 아동 관리·지원	'23. 상	복지부·여가부
4. 민간협력 활성화		
(1) 다양한 우수 민간자원 발굴·확산	'23. 상	복지부
(2) 민간자원 - 대상자 간 연계 체계화	'23. 상	복지부
(3)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 정보 제공	'24. 상	복지부